

동두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62
----------	------

제출년월일 : 2011. 2. .
제 출 자 : 동 두 천 시 장

1. 제안이유

동두천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송수행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승소비율을 변호사 승소사례금 지급시의 승소비율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소송수행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기준 승소비율 조정(안 제2조제1항)

- 당초 :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기각)
- 변경 : 청구내용의 60%이상을 인용(기각)

나. 포상금 지급액 상향 조정(안 제5조제1항)

- 당초 : 행정·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 변경 : 행정·민사소송(본안) 1인당 300,000원 이내

동두천시조례 제 호

동두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동두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를 “동두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70%이상”을 각각 “60% 이상”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100,000원 이내”를 각각 “300,000원 이내”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		기획감사실
입 안 자	실 · 과장 직위 · 성명	기획감사실장 홍 현 섭
	담당 · 팀장 직위 · 성명	의회법무담당 박 상 덕
	담당자 성명 · 전화	남 지 영 860-203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 한다. 1. 시 또는 시장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생략)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 ----- ----- 1. ----- ----- 60% 이상 ----- 2. ----- ----- 60% 이상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동두천시 또는 동두천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생략)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2. (현행과 같음)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20,000원 이내 3. (생략) ② (생략)	제5조(포상금 지급액) ① ----- ----- ----- 1. ----- 300,000원 이내 2. ----- 300,000원 이내 -----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